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】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680 |
|----------|-----|

2022. 3. 22.
자치행정위원회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선자가 시 조직 및 예산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새로운 시정 정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직의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
- 인수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~제15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‘지방

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’가 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에 포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,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「지방자치법」 위임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업무 및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간사와 대변인,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필요 예산의 확보 및 위원회의 자료·정보 등을 협조하도록 명시하였으며, 안 제19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운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인수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음.

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법 제도권 내에 둬으로써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,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장 직 업무 인수체계 기반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,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당선인의 빠른 시정 파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